

2025. 3. 13.(목)
제29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 사 보 고 서



충 주 시 의 회  
(산업건설위원회)

# 차 례

## 【 조 례 안 】 ☞ 원안가결 (2), 수정의결 (1)

<원안> 충주시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	1
<원안> 충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	5
<원안>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 충주시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심사경과】

- 가. 의안번호 : 제3930호
- 나. 제 안 자 : 곽명환 의원 대표발의(공동발의자 : 7명)
- 다. 제출일자 : 2025년 2월 26일
- 라. 회부일자 : 2025년 2월 26일
- 마. 상정일자 : 2025년 3월 12일
- 바. 의결일자 : 2025년 3월 12일
  - 제29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 사. 의결결과 : 원안가결

## 1] 제안설명 요지

- 충주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수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수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5조~제6조)
- 수출 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 사업 지원(안 제7조)
-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 관련 단체 지원(안 제8조~제9조)
- 사무의 위탁 및 수출유공자 포상(안 제10조~제11조)

### ③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안은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우리 시의 수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수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효과를 높여야 하고, 재정지원 및 규제완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3개년 (2023~2025) 계획에 따라 중소기업 중심의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추진하겠다는 정부 시책에 부응하고, ‘2025년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 통합 공고’ 에서 작년대비 9개 사업 2,218억에서 12개 사업 6,195억원으로 확대된 수출지원 예산규모와도 부합하는 조례로 볼 수 있음.

2025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현황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614호)				2024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현황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22호)			
사업명		예산 (억원)	지원 규모	사업명		예산 (억원)	지원규모
중소 기업 (9개)	수출바우처	1,275.6	3,500개사 내외	수출바우처	1,118.6	3,200개사 내외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비예산	500개사 내외	수출컨소시엄	158.5	1,300개사 내외	
	대중소기업동반진출	168.5	1,100개사 내외	대중소기업동반진출	168.5	1,060개사 내외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153	605개사 내외	전자상거래 수출시장진출	408	5,500개사 내외	
	전자상거래 수출시장진출	306	4,100개사 내외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153	1,000개사 내외	
	온라인수출플랫폼 (고비즈코리아)	34.5	2,200개사 내외	글로벌비즈니스센터 (GBC)	178	14개국 22개소	
	수출컨소시엄	158.5	1,300개사 내외	온라인수출플랫폼 (고비즈코리아)	34	2,000개사 내외	
	글로벌비즈니스센터 (GBC)	177	14개국 21개소	7개 사업 합계	2,218.6		
	신시장진출지원자금	3,825	2,100개사 내외				
소상 공인 (3개)	글로벌시장 지원사업	90	2,000개사 내외				
	소공인 해외오프라인 매장입점	3.6	200개사 내외				
	소공인 역량단계별 수출지원	4	50개사 내외				
12개 사업	합 계	6,195.7					

- 주요 내용을 보면, 수출 종합계획 수립, 수출관련 사업 및 단체 지원, 사무의 위탁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 안 제6조에서는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가능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본 조례 제정은 고관세, 고환율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관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해 보이며, 「중소기업기본법」 및 기타 법령과 상충되거나 위법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④ 질의·답변 요지 : 생략

⑤ 심사결과 : 원안가결

⑥ 첨부서류 : 없음

# 심 사 보 고 서

## 【심사경과】

- 가. 의안번호 : 제3931호
- 나. 제 안 자 : 채희락 의원 대표발의(공동발의자 : 16명)
- 다. 제출일자 : 2025년 2월 26일
- 라. 회부일자 : 2025년 2월 26일
- 마. 상정일자 : 2025년 3월 12일
- 바. 의결일자 : 2025년 3월 12일
  - 제29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 사. 의결결과 : 수정의결

## 1] 제안설명 요지

- 충주시에 소속된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임금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안 제3조)
-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회의운영 등(안 제4조~제7조)
- 생활임금의 산정기준 및 결정 등(안 제8조~제10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안은

최저임금<sup>1)</sup>으로 생활이 안정되지 않는 시 소속 근로자 등의 생활 임금<sup>2)</sup>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생활임금의 산정기준, 결정권자, 결정기한 등을 규정하였음.

○ 현재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2013년 부천시의 최초 조례 제정 때부터 지금까지도 입법할 때마다 생활임금 지급 가능 여부나 적용대상 관련하여 끊임없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6조 등 위반 논란 소지가 있어 왔음.

○ 최근 대법원에서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생활임금 지급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주민의 복지 증진’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의 조례 제정이 가능한 자치사무로 보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음.

1)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2025년 기준: 시간급 10,030원)

2)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또한,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47.4%(228개 지자체중 108개)<sup>3)</sup>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최근 적용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시 소속 근로자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 생활의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장기적으로 예산투입이 필요한 제도이므로, 향후 생활임금위원회가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적의 생활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생활임금 수급자의 경제적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정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사료됨.
-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 규정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의 해촉권자인 ‘위원장’은 안 제4조의 위원 위촉권자인 ‘시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위원회 운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④ 질의·답변 요지 : 생략

⑤ 심사결과 : 수정의결

⑥ 첨부서류 : 없음

- 충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3) 서울특별시 25개구, 인천광역시 6개구, 부산 기장군 외 12개구, 경기 3군 외 28개시, 충남 6개시, 전남 8개시 등

## 충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3931-1
----------	--------

제출일자 : 2025. 3. 13.

제 출 자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 1. 수정이유

-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위·해촉권자를 통일하여, 위원회 운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안 제6조의 ‘위원장’ 을 ‘시장’ 으로 수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제6조 중 “위원장” 을 “시장” 으로 한다.

### 3. 수정안 : “별첨”



##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심사경과】

- 가. 의안번호 : 제3932호
- 나. 제 안 자 : 신호일 의원 대표발의(공동발의자 : 0명)
- 다. 제출일자 : 2025년 2월 26일
- 라. 회부일자 : 2025년 2월 26일
- 마. 상정일자 : 2025년 3월 12일
- 바. 의결일자 : 2025년 3월 12일
  - 제29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 사. 의결결과 : 원안가결

### 1] 제안설명 요지

- 무료 공영주차장의 48시간 이상 장기주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주차를 방지하고 주차장 이용 편의를 증진시켜 시민들의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주차요금 및 가산금 (안 제2조)

### ③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안은

장기주차를 방지하여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제출하는 사항임.

○ 안 제2조제4항과 제5항에서 무료 공영주차장에 48시간 이상 장기 주차 시,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 규정을 마련 하였음.

○ 주차장법 제9조제2항과 동법 제14조제2항에서는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고, 제9조 제2항 단서조항에서는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부과는 상위법령의 위임범위에 적합하며, 본 조례안 개정 이후에는 장기주차 차량의 이동주차로 주차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④ 질의·답변 요지 : 생략

### ⑤ 심사결과 : 원안가결

### ⑥ 첨부서류 : 없음